

# 변경대비표

2013년 03월 06일

- 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- 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1년 8월 5일
- 3. 정정사유 : - 법개정 사항반영, 기재정정

#### 4. 정정사항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법개정 사항반영	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이전 생략> 나.지방채증권<중간생략>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<중간생략>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 <이하 생략>	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이전 현행과동일> 나.지방채증권<중간생략>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<u>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)</u> <중간생략>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 <이하 현행과동일>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기재정정	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계상된 <이하 생략>	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 상에 계상된 <이하 현행과동일>
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	기재정정	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대차대조표</u> <이하 생략>	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재무상태표</u> <이하 현행과동일>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제 39 조(보수)	기재정정	<p><b>제 39 조(보수) &lt;이전 생략&gt;</b>           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 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[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를 매일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하고            &lt;이하 생략&gt;</p>	<p><b>제 39조(보수) &lt;이전 현행과동일&gt;</b>           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 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[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를 매일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하고            &lt;이하 현행과동일&gt;</p>
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법개정 사항반영	<p><b>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            ①생략           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1.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</u>            ③~⑥&lt;중간 생략&gt;            ⑦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<u>판매회사를 통하여</u>            &lt;이하 생략&gt;</p>	<p><b>제 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            ①생략           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<u>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</u>            ③~⑥&lt;중간 생략&gt;           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<u>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</u>            &lt;이하 현행과동일&gt;</p>
부 칙	-	<신설>	<p><b>부 칙</b>           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</p>
신탁업자 대표이사 변경	기재정정	<u>대표이사 김영과</u>	<u>대표이사 박재식</u>